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Ⅳ

부실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례를 중심으로 -

2012. 10.

국회의원 김 영 주

(민주통합당,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부분을 보면 위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선정 방식은 고인의 영예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안현태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한 말입니다.

작년 안현태씨 안장심의 논란은 이념의 차이를 떠나 판단의 기준에 따라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논의한 국립묘지안장회의 내용에 대한 그 어떤 분석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요 사건을 구분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기준을 설정하려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미래에 저지를 수도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자료집에는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심의 회의록을 제출받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나름 많은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보다 과거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보다 공정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자료를 함께 분석해준 김운섭, 유승무 인턴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0월 국회의원 김 영 주

- 목 차 -

I. 현황

- 국립묘지 관리, 2006년부터 보훈처로 이관
- 심사 내역 및 기준

II. 구체적인 심사 기준 없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III. 문제점

- 보훈처, 심의 내용 형식적으로 관리
 - 회의록, 속기와 서면 혼재
 -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심사 심의 대상자에 대한 분석 없음
 - 대상자 중 승인, 불승인 정도만 구분 가능해

IV. 대안

- 구체적인 안장 심의 기준 마련 시급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에 심사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결과를 분석한 이후 이를 토대로 세부기준의 법적, 정서적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첨부자료>

I. 현 황

- 국립묘지 관리는 2006년1월 30일로부터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관리업무가 이관 됨

- 국립묘지 안장심의 대상
 - 병적이상자(불명예제대, 탈영, 징계처분, 전역기록 확인 불가 등)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를 확정 받은 자
 - ※ 수형사실 자체가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가능

-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

1.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3.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4. 입대 이전 범행여부
5.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 시점) 이전 범행여부
6. 사면·복권여부
7. 병적말소, 불명예제대,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내역

(2006.1.30~2012.6.30, 단위 : 건)

안장신청	심 의		비심의 (당연안장대상)
	승인	부결	
84,328	3,034	3,998	77,296

※ 국가보훈처 이관 전에는 국방부에서 심의하였음.

Ⅱ. 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심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 없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 분석 대상

○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안장심의위원회 소집회의록 현황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소집회의 회의록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개최 횟수	회의록 유무	개최 횟수	회의록 유무	개최 횟수	회의록 유무	개최 횟수	회의록 유무	개최 횟수	회의록 유무	개최 횟수	회의록 유무	개최 횟수	회의록 유무
1	유	1	무	1	녹취	1	녹취	1	녹취	1	유	1	유

2	유	2	녹취	2	녹취	2	녹취	2	녹취	2	유	2	유
3	유	3	녹취	3	녹취	3	녹취	3	녹취	3	유	3	유
4	유	4	녹취	4	녹취	4	녹취	4	녹취	4	유	4	유
5	유	5	녹취	5	녹취	5	녹취	5	녹취	5	유	5	유
6	녹취	6	녹취	6	녹취	6	녹취	6	녹취	6	유	6	유
7	녹취	7	녹취	7	녹취	7	녹취	7	유	7	유	7	유
8	녹취 (1건)	8	무	8	녹취	8	녹취	8	유	8	유	8	유
9	녹취	9	무	9	녹취	9	녹취	9	유	9	유	9	유
-		10	녹취	-		10	녹취	10	유	10	유	-	
-		-		-		11	녹취	11	유	11	유	-	
-		-		-		12	녹취	12	유	12	유	-	
-		-		-		-		13	유	13	유	-	
-		-		-		-		-		14	유	-	

※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속기록만 분석하였음. 녹취파일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이며, 이를 회의록으로 재구성 하지는 않았음.

※ 유 : 회의록 보관, 녹취 : 음성파일만 보관, 무 : 회의록 및 음성파일 미보관

□ 폭행 상해 관련 심의

- 비슷한 특수폭행 혹은 상해의 경우인데, 사건정황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서로 다르게 결정이 되었고, 상해 치사가 상해·폭행행위보다 더 큰 범죄임에도 정상참작 되었다는 이유로 가결되었음.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p>○ 위원 : 같이 음주 중 혼계한 사람을 맥주 컵으로 찌른 것임. 위원 : 어린 사람이 노인을 혼계해서 한 행위임. ○ 위원 : 맥주 컵을 깨뜨려서 귀를 찌른 행위임. ○ 위원 : 위협을 하다가 실제로 접촉하는 행위도 있긴 함. 노인을 혼계해서 분개할 수도 있음. ○ 위원 : 취중에 이런 행위는 상당히 위협한 행위임. 그런데 화랑무공훈장과 전상군경으로 되어 있음. ○ 위원 : 판결문상 치료비 보상도 있었고, 귀 뒷부분을 서로 옆치락 거리다가 스친 행위일 수도 있어 가결 의견임. ○ 위원들 : 가결 의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p> <p>○ 위원 : 툽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임. ○ 위원 : 살인미수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형량이 큼. ○ 위원 :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음. ○ 위원 : 죄명으로 불 때는 살인의도가 없는 것이고 단순폭행이기에 폭력행위등처벌법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지? ○ 위원 : 단순폭행보다는 위협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하는 등에 해당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 위원 : 툽날로 때렸다면 상해가 더 중했을 것임. 툽면으로 얼굴볼을 단순히 때린 것은 아닌지?</p>	<p>위원 : 컵으로 이마를 짚은 행위로 상당히 위협한 행위임. 위원 : 부결 의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오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음주로 인한 행위는 아니지만, 우발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임.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다른 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임. ○ 위원들 : 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상해치사죄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 : 화랑무공수훈자로 참작은 됨. ○ 위원장 : 중과실 상해사고로 교통사고 심의기준으로 비대상임.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위험한 상해행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위원 : 합의금을 끝까지 안 주려고 한 사람 같음. 배상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일반적인 폭행과는 차이가 있음. ○ 위원 :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사후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상해치사 : 상해만 입힐 목적으로 가격을 했으나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

*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

□ 교통사고 관련 심의

-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 자체로 중과실이 병합된 것이고, 음주·무면허운전을 규제하는 이유는 인사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인사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자전거 1대 때문에 실행을 받았음. ○ 위원 : 지방법원에서 형을 조금 과하게 선고 받은 것으로 보임. ○ 위원 : 임실호국원이고, 가결 의견.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장 : 음주·무면허 운전은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해야 할 것 같음. ○ 위원 : 음주운전은 좀 더 엄하게 다루긴 해야 함. ○ 위원장 :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임. ○ 위원 : 초범인 것 같음. 혈중알콜 0.069%에 징역 6월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중하게 재판을 받은 사항임. ○ 위원 :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벌금형임. 징역형을 받았으면 드러나지 않는 죄질이 불량한 것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음. ○ 위원 : 저녁 7시경인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 부결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음. ○ 위원 : 음주운전 거리가 3km 구간인데요, 통상적 음주·무면허운전에 비하여 경미한 편임. 개인적 소견으로 이 경우는 가결 의견이나, 향후 음주수치가 0.1 이상으로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합하거나 미만이라도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는 엄중히 심의하는 것이 어떤지? ○ 위원장 :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완전히 배제하고, 단순히 인사사고가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 수치가 0.1이상이면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임. 일단 이번 안건은 가결 의견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 병합사고에 의한 인사사고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	--

- 교통사고 후 차량도주와 중앙선침범을 한 행위가 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가결되었음.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에 도주 차량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교통사고인데 피해의 규모가 큼. ○ 위원 : 1년 실형도 살고, 피해의 규모도 크고. ○ 위원 : 정원 외 인원을 승차하고 운행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사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판결문상 정상참작 사유를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일반적인 도주차량과 차이가 있음. ○ 위원장 : 도주차량과 중앙선 침범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보임. ○ 위원 : 중앙선 침범이지만 피해정도가 중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비슷한 경우이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번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으킨 대상자에 대해서만 가결하였음.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p>○ 위원 : 거의 한달 차이로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으켜 단순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p> <p>○ 위원 : 덤프트럭은 중기면허인 것 같고 그 면허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음. 2종 면허자가 1종 운전시 무면허가 되는 경우와 같은 것 같음.</p> <p>○ 위원 : 70년대는 비일비재 했음.</p> <p>○ 위원 :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화해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p> <p>○ 위원 : 동일재판 건이라도 사안이 다르면 “부”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임.</p> <p>○ 위원 : 영예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해가 중한 것 같지 않고, 한 달 사이에 연속해서 일어났으나 동일 건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음. 호국원 신청자로 영예성 훼손에는 비해당 된다고 생각됨.</p> <p>위원들 : 호국원 신청자임을 감안 가결 의결</p> <p>○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무면허) 치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p>	<p>○ 위원 : 90년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던 때인 것 같은데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 같음.</p> <p>○ 위원 :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음.</p> <p>○ 위원들 : 부결 의견</p> <p>○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음주운전) 치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p>

□ 절도 관련 심의

- 같은 특수절도임에도 적당한 참작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의결을 하였음.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p>○ 위원장 : 53년도 범죄 행위로 특수절도인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p> <p>○ 위원 : 2인이 하면 특수절도임.</p> <p>○ 위원장 : 이 정도는 안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 () 그러면 안장대상으로 가결함.</p>	<p>○ 위원장 : 대전현충원 이장이며, 특수절도이며 판결문은 없음. 심의기준상 제외대상임. 다른 의견 있으신지?</p> <p>각 위원 : 없음.</p> <p>○ 위원장 : 그러면 안장제외로 의결하겠음.</p>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특수절도로 실행 수행자이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특수절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특수절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같은 절도임에도 서로 다르게 의결을 내렸음. 부결된 사안이 특수절도이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없음.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 위원장 : 판결문 기록을 보면, 자기 소관책임 하에 있는 곳을 절도한 것은 아니고, 음주 후 일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음. ○ 위원 : 전시에 인근 주민들을 약탈한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위원 :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임.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정상참작하여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 위원 : 피해장물이 환부되었음. ○ 위원 : 이장 신청자임. ○ 위원 : 황소 1마리면 생계형은 아님. ○ 위원 : 정상참작할 사안이 없어 보임. ○ 위원 : 시골에선 황소 1마리면 큰 재산임.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단순절도죄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 뇌물 횡령 배임 관련 심의

- 뇌물수수는 주는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이고 비난가능성도 동일한데 다르게 의결하였고, 뇌물공

여가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해서 가결함.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p>○ 위원 : 업무상 배임증재로 기소하면서, 만약에 배임이 성립하지 않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예비적으로 기소를 한 사건임.</p> <p>○ 위원장 :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된다는 내용임.</p> <p>위원 : 내용을 보면 회사 전무이사로서 사실상 관례적으로 많이 하는 행위임.</p> <p>○ 위원 : 기존 심사에서 현직에서 뇌물을 받는 경우는 엄격하게 심의를 하였음. 본 건을 사업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임.</p> <p>○ 위원 : 중령으로 전역한 자로, 6.25 전쟁 시 상당한 공이 있었던 것임.</p> <p>○ 위원 : 가결 의견</p> <p>○ 위원 : 뇌물죄는 엄격하게 심의를 하였으나, 사업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6.25 전쟁 충무무공수훈자인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p>	<p>○ 위원 : 현직에서 뇌물을 받은 범죄임.</p> <p>○ 위원 : 부결 의견</p> <p>○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뇌물수수로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p>

- 횡령과 배임은 사실상 비슷한 범죄이며 형법에서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타당한 참작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불합리한 차별적인 의결임.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p>○ 위원 : 가결 의견</p> <p>○ 위원장 : 유조차 운전사로 근무 중 배임죄로 수형 받았으나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p>	<p>○ 위원들 : 부결 의견</p> <p>○ 위원장 : 업무상 횡령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p> <p>○ 위원 : 폭행부분보다는 업무상 횡령죄 부분이 죄질이 더 좋지 않음. 현재도 이 정도의 형량이 나올 수 있음.</p> <p>○ 위원장 : 윤활유 80리터 횡령이면 적지 않을 것 같음.</p> <p>○ 위원: 당시 6천원이면 어느 정도인</p>

	지? ○ 위원장 : 당시엔 80kg 쌀 한가마 정도 됨. ○ 위원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

□ 마약류 소지 및 재배 관련 심의

- 마약류는 일체 근절이 필요한 물품임에도 그 재배하는 양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한다는 점은 불합리함.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 위원장 : 마약류 범죄는 소규모 단순 재배여부에 따라 안장여부를 달리 하였음.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소규모 단순재배로 판단, 정상참작하여 안장 대상으로 의결.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앵속 630주 재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위원 : 충남 서산지역이면 실제로 양귀비가 많이 자생함.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소규모 단순재배이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 위원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앵속 소량(43주)을 재배하다가 몰수됨.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 기타 부문 심의

-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점에서는 동일한데,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의결을 하였음.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2명의 친구를 구조한 것임. ○ 위원 : 친구들과 간 것으로 보호자 감독의무 등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구조행위를 2번씩이나 하였음. ○ 위원 : 1999년도에 사망하였으나 2010년도에 의사자로 인정되었음. ○ 위원 : 같이 놀러와서 한 행위인데 의로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위원 : 수심 2~3m 지점에서 들어간 것이나, 음주를 한 것이나 본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

- 군인 신분이기 전에 행한 범죄는 안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배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타당한 참작사유의 제시 없이 부결함.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 : 군입대 전 범죄임.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위원장 : 군입대 전 상해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입대 전 범죄임. ○ 위원 : 부결 의견 ○ 위원 : 입대 전이라도 부결 의견 ○ 위원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 : 군입대 전 범죄임.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군입대 전 특수절도 및 폭력 행위범위반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 : 군입대 전 범죄임. ○ 위원 : 죄명은 주거침입이나 사건내용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이고 남자 3명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처녀 1명을 간음할 의도로 침입함. 입대전 범죄이나 의도 자체는 나쁘다고 봄. 강간미수로 볼 수 있음. ○ 위원 : 입대 전 범죄이나 죄질에 문제가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음. 당시 25세면 적은 나이도 아님. ○ 위원 : 입대 전 범죄라도 죄질에 따라 거를 것은 결려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들 : 안장 비대상 의견 ○ 위원장 : 군입대 전 범죄이나 사건내

	<p>용 등 감안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p> <p>○ 간사 : 2012년 제4회 심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행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판결문이 없어 사건내용에 대해 유족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검토하였음. 유족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사건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함. 다만 당시 사회적으로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이미 60여 년 전의 일인데다 이후 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오신 점 등 감안하여 선처를 요망하는 탄원이 있었음.</p> <p>○ 위원 : 당시 나이도 26세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면 내용이 중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음.</p> <p>○ 위원들 : 안장 비대상 의견</p> <p>○ 위원장 : 군입대전 범죄이고, 사건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국가보안법위반'사항으로,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p>
--	---

- 산림법 위반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삼림을 훼손하였는가 하는 점은 차별취급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참작사유로 보이지 않음.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p>○ 위원 : 어린나무를 벌채하였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음.</p> <p>위원 : 벌채한 나무는 모두 몰수하였음.</p> <p>○ 위원들 : 가결 의견</p> <p>○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p>	<p>○ 위원 : 산림법 위반은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40~60년생 나무이면 굵고 상당히 좋은 나무이기에 판매목적으로 보임. 부결 의결.</p> <p>○ 위원 : 단순 생계형으로 보이진 않음.</p> <p>○ 위원 : 부결의견</p> <p>○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p>

- 부정수표를 행사한 자들 간에 단지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만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차별취급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가 부정수표의 유통을 통해 사회거래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불합리함.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변제 여부 등에 따라 안장여부를 결정하였음. ○ 위원 : 기존 심의 사례와 비교 시, 안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부정수표위반은 안장 비대상 의견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판결문상 변제여부 기록은 없는지. ○ 위원 : 변제가 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 유예를 받은 것은 아닌지. ○ 위원 : 그런 것만은 아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통상적으로 변제가 될 경우 죄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음.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부결 의견임.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야간주거침입과 존속상해의 경합이 더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저히 불합리

안장 대상	안장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사과를 하기 위해 집에 침입한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야간주거 침입 절도죄로, 다

<p>○ 위원 : 판결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음.</p> <p>○ 위원 : 존속상해는 본인이 때린 것보다 부친이 야단을 치니까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보임.</p> <p>○ 위원 : 사실관계를 추정 시 동네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로 보임. 처음에 부친이 처벌을 원했다가 이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 했던 것으로 보임.</p> <p>○ 위원 : 존속상해 외 정교한 사실을 사과하기 위해 뒷담을 침입한 것은 어떻게 보는지</p> <p>○ 위원 :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p> <p>○ 위원 : 판결문 상 정신이상 등 기록은 없는지?</p> <p>위원 : 판결문 상 피해가 큰 것 같지 않음.</p> <p>○ 위원 : 동네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로 보임. 영예성 훼손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문임.</p> <p>○ 위원 : 가결 의견</p> <p>○ 위원 : 정교한 사실을 인정한 점은 간통한 것이 아닌지?</p> <p>위원 : 정교한 사실이 혼인 이전일 수도 있음.</p> <p>○ 위원 : 혼인 이전일 수도 있음.</p> <p>○ 위원 : 적용법률에는 간통죄가 없음.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과 부친의 상해로 존속상해가 적용된 것임.</p> <p>○ 위원 : 사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유가족 탄원서 등 정상참작 사유는 있다고 사료됨.</p> <p>○ 위원들 : 가결의견</p> <p>○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p>	<p>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p>
---	-------------------------------

Ⅲ.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 보훈처, 심의 내용 형식적으로 관리

- 회의록, 속기와 서면 혼재

- 2006년부터 국방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국가보훈처는 초창기에는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다가 이후 녹취와 서면 회의록 형태로 보관하고 있음
- 하지만 녹취된 파일은 이후 회의록 형태로 변환 시키지 않은 채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문서로 보관중인 회의록만 분석할 수 있었음.

-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심사 심의 대상자에 대한 분석 없음

- 현재 보훈처는 심사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작성은 하고 있지만, 단지 보관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상, 비대상 여부 정도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심의 대상자들의 범죄 유형, 정도나 대상자들의 전역 당시 계급, 범죄행위 당시 연도 등을 분석하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심의하면서 참고할 소위 심의사례들을 참고할 수 없어 유사한 사례지만 안장 대상, 비대상이 판정이 엇갈리고 있음.

- 현 회의록, 대상자 중 승인, 불승인 정도만 구분 가능해
 - 대부분의 회의 결과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국가보훈처는 대부분의 경우가 간단한 심의로 대상자가 정해지는 관계로 구체적인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음.
 - 하지만 이같은 회의록 작성 행태로 인해 향후 심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인 자체가 없음.

IV. 대안

○ 구체적인 안장 심의 기준 마련 시급

- 故안현태 안장 심의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심의 기준 없이 심의위원들의 판단으로 심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심의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대략적인 구분과 심의 판결례와 비슷한 구분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임.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에 심사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결과를 분석한 이후 이를 토대로 세부기준의 법적, 정서적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관리를 국방부에서 이관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심의결과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 적이 없음.
- 정기적인 백서 발간과 심의결과,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임.

※ 국립묘지 안심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내용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③ 소집회의 진행방식은 안건 제안자 측의 안건 설명, 토론, 의견수렴 또는 표결,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④ 소집회의 시 안건의 “보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경우 등 보완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⑥ 소집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5일전까지”를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으로 함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함

- ③ 서면회의 개최를 위원들에게 통보를 할 때에는 회의일시, 서면의결서 제출기간, 안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통보문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③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1]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보훈처 훈령 제790호	제정 2006. 5.29.
국가보훈처 훈령 제853호	개정 2008. 6.23.
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	개정 2010.12.29.
	개정 2012. 7.24. 국가보훈처 훈령 제100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
2.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3. 법무부 법무심의관
4. 국방부 인사기획관
5. 행정안전부 의정관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②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 보훈단체, 법조계 등 국립묘지 관리·운영·안장 및 제도 관련 분야 전문가
2. 국가보훈업무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실무운영위원회 구성) ① 영 제10조에 따른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으로 하고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과(팀)장
2.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장
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4.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과장
5.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③ 실무운영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상자와 타목의 순직·공상공무원 및 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대통령은 제외한다) 및 국가사회공헌자의 묘의 면적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나.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라 안장기간 60년이 경과한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여부
 6.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실무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4호의 안전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3.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4. 입대 이전 범행여부
5.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6. 사면·복권 여부
7. 병적말소, 불명예 제대,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제5조(회의방법)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집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집회의의 진행방식은 안건 제안자 측의 안건 설명, 토론, 의견수렴 또는 표결,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④ 소집회의의 시 안건의 "보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경우 등 보완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⑥ 소집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의의 소집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은 과(팀)장급 이상으로 하며, 회의진행 중 즉석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 권한이 없다.

③ 서면회의의 개최를 위원들에게 통보를 할 때에는 회의일시, 서면의결서 제출기간, 안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통보 문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검토 등) ① 심의위원회의의 간사는 심의가 필요하여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비서류 완비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과 유족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내용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제안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정서 작성)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송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나 공문으로 심의의결자 명단을 붙여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영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조사 및 청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서면으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등)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운영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②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송부 및 의사 확인도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3조(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소집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0.12.29. 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24. 국가보훈처 훈령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2]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2010년 제11회 의안번호 50>

의안번호 제47호

위원 : 전치 2주지만, 다발성 심부열창으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중하다고 볼 수 있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친 행위는 범행 수범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만약 조금만 잘못되어도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음 아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8호

특이사항 없이 부결

의안번호 제49호

위원 : 늘설이라서 진단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임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0호

같이 음수 중 혼계한 사람을 맥주 컵으로 찌른 것임

위원 : 어린 사람이 노인을 혼계해서 한 행위인데요

위원 : 맥주 컵을 깨뜨려서 귀를 찌른 행위임

위원 : 위협을 하다가 실제로 접촉하는 행위도 있긴 함. 노인을 혼계해서 분개할 수도 있음

위원 : 취중에 이런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데요. 그런데 화랑무공훈장과 전상군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 판결문 상 치료비 보상도 있었고, 귀 뒷 부분은 서로 앞치락거리다가 스쳤을 수도 있는 행위일 수도 있어 가결 의견임

○ 위원들 : 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6회 의안번호 48>

의안번호 제46호

위원 : 소량이 아님

기은 마약법은 엄격히 심의하나 다만, 소량의 상비약으로 단순 재배하는 경우는 정상참작을 하였으나 극소량이 아닌 경우는 비대상으로 하였음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7호

○ 위원 : 가결 의견

● : 상대방이 먼저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보임

우발적 사건 → 안장대상

○ : 가결 의견

● :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8호

위원 : 툽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임

→ 관습풍습이 아닌

위원 : 살인미수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형량이 큼

주지법에 이의한 경우

: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음

위원 : 죄명으로 볼 때는 살인의도가 없는 것이고 단순폭행이기에 폭력행위 처벌법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지?

: 단순 폭행 보다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하는 등에 해당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 위원 : 툽날로 때렸다면 상해가 더 중했을 것임. 툽면으로 얼굴 불을 단순히 때린 것은 아닌지?

○ 위원 : 오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음주로 인한 행위는 아니지만, 우발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임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9호

- 위원 : 죄질 내용이 좋지 않아 보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0호

- :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 것임
-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1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2호

- 위원 : 존속상해는 친고죄가 아닌지
- : 사건은 입대 전 미성년 때이고, 군 제대후 형선고 판결을 받은 것임
- 위원 : 판결문에 고발일자가 나오는지?
- : 판결문에 사건번호가 66으로 시작함
- : 사건수리가 1966년이고 군 입대 시점이 1966년인 점을 감안시 군 입대로 판결이 늦어진 것으로 보임
- : 기존 심의 기준으로 볼 때, 입대 전 범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 : 입대 전 범죄로 가결 의견임
- : 죄질 내용도 존속상해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입대 전 범죄로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0년 제8회 의안번호 61>

의안번호 제56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57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58호

○ 간사 : 당시 사건 피해자 등 부대원 탄원서가 있음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9호

○ 위원 : 유리를 깬 것이지, 상해를 가하려고 한 행위는 아님

○ 위원 : 상해부분은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님

○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0호

○ 위원 : 벌금 1천원이며, 당시에 큰 돈임

○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61호

○ 위원 : 컵으로 이마를 짚은 행위로 상당히 위험한 행위임

○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62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63호

특이사항 없이 부결

<2011년 제7회 의안번호 70>

의안번호 제65호

- 위원 : 가결 의견
- : 가결 의견
- : 단순폭행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66호

- 위원 : 쌍방이 행한 폭행으로 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7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8호

- 위원 : 부부사이 폭행은 친고죄가 성립되는지
- 위원 :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 :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이 정도도 일반 기준으로 보았을때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음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9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행위로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0호

- 위원 : 다른 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어느정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임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상해치사죄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고의가 있는 범죄인.

의안번호 제71호

- 위원 : 당시 경찰이 공비토벌작전을 많이 수행하던 시기임 장모에게 행한 행위는 나쁘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 하면 가결 의견
- 위원 : 가결의견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존속상해지만 정상참작하여 안장 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72호

- 위원 : 노인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임
- 위원 : 이장신청자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3호

- 위원 : 1958년 범죄는 중상해를 가한 것이고, 1977년 범죄는 뺑소니이며 1990년 범죄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사기죄로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0년 제9회 의안번호 4>

- 위원장 : 총기를 적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총알에 대하여 군용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음. 총기 사망 사고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 : 화랑무공수훈자로 참작은 됨

- 위원장 : 중과실 상해사고로 교통사고 심의 기준으로 비대상임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누범이고, 도주차량 등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중과실 치상사고지만, 교통사고 심의 배제 기준 초과는 아니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5회 의안번호 49>

의안번호 제49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위험한 상해행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고통과 증과신 정상화처상이 안장대상이 된것과이 결정성

의안번호 제50호

● 위원장 : 사람에게 던진 것은 아님

○ 위원 : 술병 파편 조각이면 상당히 날카로운 것임

○ 위원 : 술집에서 주기에 취했다라도 술병을 던진 행위 자체도 범죄행위이며, 그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행위로 범죄행위임

○ 위원 : 본인이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려고 한것은 아니었는지?

○ 위원 : 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집에서 술병을 던지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위험한 행위임

○ 위원 : 직접적인 상해 의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지?

○ 위원 : 판결문 상 징역1년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위원 : 부결 의견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1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2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11회 의안번호 44>

의안번호 제43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4호

위원 : 합의금을 끝까지 안주려고 한 사람 같음. 배상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일반적인 폭행과는 차이가 있음

위원 :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사후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5호

위원 : 밤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해서 폭행한 사건으로 정상 참작이 가능

위원 : 무공훈장을 2개나 받았음

위원들 : 호국원 이장을 조건으로 가결 의견

● 위원장 :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호국원 이장을 조건으로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7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0년 제9회 의안번호 13>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13호

- 위원장 : 자전거 1대 때문에 실형을 받았음
- 위원 : 지방법원에서 형을 조금 과하게 선고 받은 것으로 보임
- 위원 : 임신후국원이고, 가결 의견
- : 가결 의견
- : 음주·무면허 운전은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4호

- : 보통 시골에서 손을 들면 트럭에 승차시켜 준 경우 같음
- 위원 : 6·25참전 기간도 정상적으로 했음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도주차량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중과실 중상해 사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7호

<2010년 제11회 의안번호 19>

의안번호 제13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중과실 사망사고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4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15호

○ 위원장 : 교통사고보다도 사체유기 혐의가 문제인 것 같음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6호

: 1970년대에는 개문발차 이런 행위가 통상적이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문제인 것 같음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7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18호

● 위원장 :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침범한 것임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9호

○ 위원 :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해야 할 것 같음

○ 위원 : 음주운전은 좀 더 엄하게 다루긴 해야 함

- 위원장 :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임
- [redacted] 위원 : 초범인 것 같음. 혈중알콜 0.069%에 징역6월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중하게 재판을 받은 사항임
- [redacted] 위원 :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벌금형임. 징역형을 받았으면 드러나지 않는 죄질이 불량한 것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음
- [redacted] 위원 : 저녁 7시경인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 부결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음
- [redacted] 위원 : 음주운전 거리가 3km 구간인데요, 통상적 음주·무면허 운전에 비하여 경미한 편임. 개인적 소견으로 이 경우는 가결 의견이나, 향후 음주수치가 0.1 이상으로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합하거나 미만이라도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는 엄중히 심의하는 것이 어떤지?

- [redacted] :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완전히 배제하고, 단순히 인사사고가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 수치가 0.1이상이면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인데요. 일단 이번 안건은 가결 의견인지요?
- [redacted] : 가결 의견
- [redacted]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0호

- 위원장 : 횡단보도보행자 의무위반이지만 경상해 치상이지요? 중상해면 배제인데요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5회 의안번호 13>

후 상정하는 것이 어떤지?

○ 위원들 : 동의함

● 위원장 : 병적기록 자료 재확인 후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함

의안번호 제12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평시 단기간 탈영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3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 병합사고에 의한 인사사고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도주차량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간통범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7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0년 제11회 의안번호 4(국방)>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에 도주차량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 간 사 :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의결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국가보훈처장 제안 제1호, 제3호, 제7호~제11호, 제16호~제22호, 제26호, 제28~제29호, 제34호~제36호, 제43호, 제45호, 제49~제50호, 제52호~제53호, 제55호~제57호, 제60호, 제65호, 제78호~제79호, 제83호, 제86호, 제90호~제95호, 제98호, 제104호와 의안번호 국방부 장관 제안 제2호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가결되었으며
- 의안번호 국가보훈처장 제안 제97호, 제100호는 국립호국원 조건부 안장대상으로 가결되었으며,

<2011년 제6회 의안번호 10>

의안번호 제6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사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8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사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단순절도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1호 제14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입대 전 범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 사망사고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7회 의안번호 4(국방)>

【국방부장관 제안 5건】

의안번호 제1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관세법 위반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삼립령 위반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다수과실 치사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호

- 위원 : 판결문상 정상참작 사유를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일반적인 도주차량과 차이가 있음
- : 도주차량과 중앙선 침범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보임
- 위원 : 중앙선 침범이지만 피해정도가 중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임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입대 전 범죄로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14회 의안번호 14>

의안번호 제12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사고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3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사고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4호

- 위원 : 교통사고인데 피해의 규모가 큼.
- 위원 : 1년 실형도 살고, 피해의 규모도 크고...
- 위원 : 정원의 인원을 승차하고 운행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5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 경상해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6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7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입대전 범죄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12회 의안번호 6>

의안번호 제6호 ()

위원 : 거의 한달 차이로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으켜 단순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위원 : 덤프트럭은 중기면허인 것 같고 그 면허가 없다는 얘 기인 것 같음. 2종 면허자가 1종 운전시 무면허가 되 는 경우와 같은 것 같음

위원 : 70년대는 비밀비재 했음

위원 :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화해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위원 : 동일재판 건이라도 사안이 다르면 “부” 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임

위원 : 영예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해가 중한 것 같지 않고, 한달 사이에 연속해서 일어났으나 동일 건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음. 호국원 신청자로 영 예성 훼손에는 비해당 된다고 생각됨

○ 위원들 : 호국원 신청자임을 감안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무면허) 치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 치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8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 치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함

<2012년 제3회 의안번호 11>

의안번호 제10호

위원 : 과실치상사고이지만 무면허운전은 좀 달리 볼 필요성은 없는 지

위원 : 야채상을 하는 자로 생계형으로 보이고, 사망사고가 아니고 피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것 같으므로 정상참작 사유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음

위원 : 그간 심의사례 등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할 것 같음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무면허운전) 치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1호

: '90년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던 때인 것 같은데 피해정도는 경미한 것 같음

위원 :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음

위원들 : 부결 의견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음주운전) 치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2호

위원 : 생계형으로 판단됨

위원들 : 가결 의견

위원장 : 생계형 중과실 치상사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3호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군입대 전 범죄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06년 제4회 의안번호 3>

: 제3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께서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위원 : 저번 심의회에서 영천으로 희망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안건이었는데, 영천으로 희망한다면,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 지난번 회의에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천호국원으로 변경 희망한다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유족들이 영천호국원 안장을 희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안장대상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가결선포 후 의사봉으로 3타 ▶

#2

위원: 성폭법(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범죄이나 성폭법에 해당되는 범죄로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가결선포 후 의사봉으로 3타 ▶

#3

: 53년도 범죄 행위로 특수절도인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2인이 하면 특수절도입니다.

: 이 정도는 안장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장대상으로 가결

하겠습니다.

◀ 가결선포 후 의사봉으로 3타 ▶

#4

: 이장자는 엄하게 적용하고 있고, 심의기준상 제외 대상인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안장제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결선포 후 의사봉으로 3타 ▶

위원 : 도망제적의 경우에 그 사유와,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군대생활을 했느냐를 심의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 도망의 죄로 징역 1년 6월, 원인은 모르고, 전쟁시는 아니지만 불안한 상태로 보여 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 전시 도망의 경우는 부결시켰고, 형을 살고 복귀한 후에 만기 제대한 경우에는 안장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 집안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망의 죄로 군에서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 : 요즈음은 정상참작 등을 하는데 그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 영천호국원 안장 희망하며, 형을 살고 나서 만기전역한 경우인데, 안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러면, 안장대상으로 가결하겠습니다.

◀ 가결선포 후 의사봉으로 3타 ▶

#6

<2006년 제4회 의안번호 7>

위원 : 5·18묘지가 조성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 이장이나 안장이나의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 : 미성년 때의 범죄이고, 다른 이장과 틀립니다.

: 안장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그러면, 안장대상으로 가결하겠습니다.

◀ 가결선포 후 의사봉으로 3타 ▶

#7

● 위원장 : 대전현충원 이장이며, 특수절도이며 판결문은 없습니다. 심의기준상 제외대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각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안장제외로 의결하겠습니다.

◀ 가결선포 후 의사봉으로 3타 ▶

● 위원장 : 앞으로 선례를 정리해서 위원들께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 : 특이사항 없이 부결

#9 : 부결

위원 : 상습절도범으로서 전문범으로 안장제외 했으면 합니다.

#10 : 위원의 의결에 따라 가결

위원 : 상습 절도로 되어 있으나 기소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하기는 하나, 전과가 없고 특가법상의 절도와 다르므로 안장대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 특이사항 없이 가결

: 검토하다가 입대일자와 전상일자가 동일 날짜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심

<2010년 제7회 의안번호 42>

의안번호 제39호

- : 부결 의견
- 위원 : 심야에 주거 침입한 것임
- :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공모하여 심야에 주거침입한 것임.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0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누범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1호

특이사항 없이 부결

의안번호 제42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특수절도로 실행 수행자이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3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1966년 범죄는 입대 전 범죄지만, 1973년 범죄도 특수절도로 실행 수행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0년 제7회 의안번호 46, 47>

의안번호 제44호

위원 : 노동을 하는 자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약국에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죄명은 절도지만 점유이탈물 횡령과도 비슷한 점이 있음. 금액은 크지만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으로 정상참작이 되는 것 같음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누범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특수절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7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특수절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8호

특이사항 없이 부결

의안번호 제49호

원 : 생계형으로 보임

<2011년 제4회 의안번호 90>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 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0호

- : 판결문 기록을 보면, 자기 소관 책임하에 있는 곳을 절도한 것은 아니고, 음주 후 일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음
- 위원 : 전시에 인근 주민들을 약탈한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위원 :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임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정상참작하여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1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과실범으로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2호

- 위원장 : 상이처가 어디인지?
- : 좌하퇴 절단으로 되어 있음
- 위원 : 전시 중 좌하퇴절단 부상임에도 1959.12월 전역한 자임
- 위원 : 탈영횟수도 반복하여 많음. 부결의견
- 위원 : 1974년 사망자로 이장신청자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3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7회 의안번호 24>

의안번호 제20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1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2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사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3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사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4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단순절도죄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5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단순소집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6회 의안번호 38>

의안번호 제38호

- 위원 : 피해장물이 환부되었음
- 위원 : 이장 신청자임
- 위원 : 황소 1마리면 생계형은 아님
- 위원 : 정상참작할 사안이 없어 보임
- : 시골에선 황소 1마리면 큰 재산임
- 위원들 : 부결 의견 *절도 / 관성경호용 안장하는 것까지 허용성.*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9호

- 위원 : 당시 32천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님
- 위원 : 공모하여 합동해서 절취함 *합동범 → 비안장.*
- 위원 : 실행 수행자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0호

- 위원 : 1972년 절도 범죄는 제대 직후임
- : 가게에서 돈통을 들고 나온 것임. 생계형으로 보긴 어려움
- 위원 : 절도 범죄는 가게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임
- 위원 : 영사기를 이용하여 음화를 전시한 것은 사진도 아니고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음
- 위원 : 음화전시는 식당에서 3명에게 한 것임
- 위원 : 음화전시가 직업상 한 행위라면 정상참작할 여지가 없어 보임
- 위원 :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사람에게 했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없지만, 단순 과시욕으로 일부 사람에게 했었다면 참작할 사유가 있음 *영리목적범죄 → 주로 비안장*

<2011년 제1회 의안번호 27, 28>

의안번호 제21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단순과실 치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2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단순과실 치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3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누범이고 실행 받은 점,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4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단순과실 사고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누범으로 기준 초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6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단순과실 치사료.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7호

- 위원 : 업무상 배임중재로 기소하면서, 만약에 배임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예비적으로 기소를 한 사건임
- :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된다는 내용임
- : 내용을 보면 회사 전무이사로서 사실상 관례적으로 많이 하는 행위임

: 기존 심사에서 현직에서 뇌물을 받는 경우는 엄격하게 심의를 하였음. 본 건은 사업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임

위원 : 중령으로 전역한 자로, 6.25전쟁시 상당한 공이 있었던 것임

: 가결 의견

: 뇌물죄는 엄격하게 심의를 하였으나, 사업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6.25전쟁 충무무공수훈자인 점 등 정상참작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8호

- 위원 : 현직에서 뇌물을 받은 범죄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뇌물수수료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9호

- 위원 : 횡령액이 소액은 아님, 부결 의견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업무상 횡령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0호

- 위원 : 수차례 장기적으로 한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보임
- 위원 : 금액도 소액임
- 위원 : 가결 의견
- : 가결 의견
- : 소액이고 당시 선원들이 일회성으로 행한 범죄행위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1호

- 위원장 : 횡령금액이 소액은 아닌것 같음, 정상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지?
- 위원들 : 부결 의견

<2011년 제8회 의안번호 33>

- :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함

의안 제33호

- : 가결 의견
- : 유조차 운전사로 근무 중 배임죄로 수형 받았으나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업무상 횡령 및 장물취득 범죄로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5호

- : 부결 의견
- 위원 : 본인이 착복한 것인지?
- 위원 : 조합원들에 적은 규모의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임
- : 부결 의견
- : 업무상 횡령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6호

- : 계속 수뢰한 것으로 보임
- 위원 : 밀수해서 들어온 물품들에 대해 뇌물을 받은 것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7호

- 위원 : 유족 진술을 보면 취중에 열차내에 있던 옷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발생한 사건일 수도 있음

<2011년 제9회 의안번호 29>

의안번호 제28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공문서 위조, 뇌물관련 등 범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9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업무상 횡령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0호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업무상 횡령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1호

- : 위원 : 사면된 것인지?
- : : 판결문에는 사면기록이 있음
- : 위원 : 1962년경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액이 소액이 아니며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임
- :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2호

- : : 가게에 들어가서 절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 위원 : 상이군경이고, 노상에 놓은 것을 우발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임
- : 위원 : 직업이 농업 종사자로, 우발적 행위로 보임
- : : 가결 의견
- : : 우발적 범죄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7회 의안번호 43>

의안번호 제39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장기간 탈영 후 불명예 제대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0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장물운반죄로 실행 수행 후 불명예 제대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1호

- 위원 : 사망 후에 상이군경으로 인정 받은 자임
- 위원 : 사안으로 보았을 때 중한 죄질은 아닌 것으로 보임
- : 이장 신청자지만 무공훈장 3개 수훈자임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아자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2호

- : 공상 1급으로 하반신 마비 상이자임
- 위원 : 서울현충원 납골당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 : 위원 의견은 어떤지?
- 위원 : 동의함
- : 동의함
- : 다른 의견 없으면, 서울현충원 납골당으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3호

- 위원 : 축행무분 보다는 업무상 횡령죄 부분이 죄질이 더 좋지 않음. 현재도 이정도의 형량이 나올 수 있음
- : 윤활유 80리터 횡령이면 적지 않을 것 같음

○ 위원 : 당시 6천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 : 당시엔 80kg 쌀 한가마 정도 됨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 제44호

○ 위원 : 상습인 것 같음

○ 위원 : 사안은 경미하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것 같음

○ 위원 : 이장 신청자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 제45호

○ 위원 : 현재는 집행유예를 하지만, 당시엔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기에 선고유예 하는 조건으로 제적을 시킨 사례로 죄질은 좋지 않은 것임

● : 지속적으로 부조리를 한 행위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 제4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뇌물수수로 형 선고유예를 받고 제적된 자로 45호 안건과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7호

○ 위원 : 당시 차장이 출발신호를 하니까 발생한 사고임

○ 위원 :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상황? 권도?

<2011년 제10회 의안번호 28>

○ 위원들 : 무면허 및 음주운전자임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무면허 음주운전자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7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8호

○ 위원 : 피해변상을 했음

○ 위원 : 당시 횡령한 금액이 소액은 아님

○ 위원 : 다만, 채무변제 때문에 횡령한 것이고 피해 변상된 점, 화랑무공수훈자인 점 등 감안하여 가결 의견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업무상 횡령죄이나 정상참작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9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업무상 횡령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0호

○ 위원 : 판결문상 정상참작 사유는 있으나, 전형적인 재단법인 비리사건의 예로 비자금 조성을 위해 금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부결 의견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업무상 횡령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2년 제2회 의안번호 34>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4호

위원 : 자기가 지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라고 안내한 사건임

위원 : 김신조 간첩침투시 소탕작전에 참여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음. 김신조 소탕작전은 상당히 힘들었음

위원 : 기존 심의시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 사안인데 예외를 인정하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음. 밤에 발생한 사건이고 공범으로 볼 수 있음

위원 : 죄명도 중요하지만 사건내용을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경우도 있음. 화랑무공훈장 수훈의 공적을 감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위원들 : 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7호

위원 : 장물취득을 상습적으로 행함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9회 의안번호 61>

- [redacted] 위원 : 회사용도가 아닌지?
- [redacted] 위원 : 당좌수표 1매이고, 회사직원으로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법률상 발행명의를 아닌 발행자로서 책임을 진 것으로 판단됨. 금액이나 경위 등을 참작시 중한 사안은 아님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0호

- [redacted] 장 : 환자들을 계속 치료한 것으로 보임
- [redacted] 회 위원 : 2년 가까이 한방의료 행위를 하였음
- [redacted] 위원들 : 부결 의견
- [redacted] 위원장 : 불법의료 행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1호

- [redacted] 위원 : 정상참작이 있다고 봄
- [redacted] 위원 : 소지하고 있던 일부 약을 돈 주고 판 것으로 보임. 일제 단속기간에 적발된 것이 아닌지
- [redacted] : 가결 의견
- [redacted]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2호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3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8회 의안번호 71>

의안번호 제70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법률사무취급 및 무고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1호

- : 마약류 범죄는 소규모 단순 재배여부에 따라 안장여부를 달리 하였음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소규모 단순재배로 판단, 정상참작 하여 안장 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72호

- 위원 : 부결 의견
- 위원 : 5평에 앵숙 5작을 파종한 것이면 소량은 아니며 많은 양임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3호

- : 부결 의견
- 위원장 : 상습도박은 기존 심의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였는 바,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74호

- 위원 : 흥기인 낫을 들고 협박한 부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0년 제12회 의안번호 65>

○ 간 사 : 판결문 상 피고인의 범행이 그가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기록은 있음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5호

위원 : 충남 서산지역이면 실제로 양귀비가 많이 자생함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소규모 단순재배이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범죄 3건이상 형 확정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7호

: 피해자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됨

위원 : 동의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8호

○ : 위원님 의견은 어떤지?

○ 위원 : 상습도박 죄는 전문 도박꾼들이 여러 사람들을 유인해서 하는 행위임

○ 위원 : 속칭 “섯다”라는 도박은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도박임

○ : 부결 의견

○ : 상습도박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2년 제9회 의안번호 64, 65>

의안번호 제62호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거이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3호

- 위원 : 2006년도부터 선거법이 까다로워졌음
- 의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의원장 : 다른 의거이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호 제64호

- 의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의원장 : 앵속 630주 재배. 다른 의거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5호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앵속 소량(43주)을 재배하다 몰수됨.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6호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거이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7호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거이 없으며 아자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8호

- 위원 : 70년도 15만원은 큰 금액임
- 의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의원장 : 다른 의거이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호 제69호

- 위원 : 죄명은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죄질은 사기임
- 의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06년 제3회 의안번호 9>

위원 : 판결을 받아서 그 죄과를 치렀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상쇄되어 모든 사람들이 심사대상이 아니죠, 징역이 아니고 금고이기 때문이라면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위원 : 업무상 과실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아마 팔이 불편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 39명이 사망한 유가족들이 볼 때, 그렇게 큰 사고를 치르고도 국립묘지는 가는구나 하게 되므로 곤란합니다.

◎ 위원장 : 다음부터 안건 작성시 안장희망 묘지를 표시해 주기바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마지막에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호 : 특이사항 없이 가결

제9호

위원 : 법상 당연 안장제외 대상은 파면, 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 불명예제대는 군인으로서 파면, 해임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원 : 특무상사로 근무한 것을 감안하여 대구에서 가깝고 하니, 영천호국원 안장은 어떻겠습니까?

위원 :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해야 합니다. 다른 묘지로 의결은 곤란하고,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일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호

위원 : 사병이 도망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선고를 받았으므로 제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처벌 받은 것이 기준이지, 장교와 사병 등 신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 사병은 의무 복무이고, 상사는 의무가 아니고 그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 : 판결일자는 1955년도이나 그 죄는 전시일 수도 있는데, 입대하여 4,5개월 정도면 일병이 되고 도망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면 참전사실을 상쇄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호는 안장제외로 하겠습니다.

제11호 : 특이사항 없이 가결

제12호 제13호 : 특이사항 없이 부결

<2010년 제7회 의안번호 105>

의안번호 제103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장기간 탈영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장기간 탈영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도망죄로 불명예 제대한 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6호

- 위원 : 가결 의견임
- : 탈영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 위원 : 자수하여 만기전역한 자임
- 위원 : 탈영 삭제 후 마지막 계급이 있는 자로, 자수하여 만기를 채운 경우임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7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전시탈영자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7회 의안번호 101>

[Redacted] : 1951.5월 전역한 것은 맞으나, 국가가 전역명령사유를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국가책임도 있는 것임

○ 위원들 : 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0호

● [Redacted] : 범죄 내용이 군용물 횡령과 훼손 성격임

○ [Redacted] 위원 : 부결

○ [Redacted] : 부결의견

● [Redacted]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 제101호

○ [Redacted] 위원 : 군기유해 죄명이면 선상에서 항명 가능성이 있음

○ [Redacted] : 부결의견

● [Redacted] : 군기유해로 형 실행 후 불명예제대한 자료,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 제102호

○ 위원들 : 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3호

○ 위원들 : 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4호

○ [Redacted] 위원 : 위조도 있음

○ [Redacted] 위원 : 죄질이 좋지 않음

<2010년 제12회 의안번호 101>

○ 위원장 : 전시탈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9호

○ 위원장 : 징역1월에 군기유해, 무단이탈, 폭행죄명인데요, 군에서는 사소한 죄명도 모두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0호

○ 위원장 : 1967.4월, 1970.7월 2회 탈영한 것임

○ 간 사 : 1967.7.31.기록은 오타로 보임. 전역사유는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된 자임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1호

○ 위원장 : 전시 탈영이긴 함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정상참작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2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장기탈영 후 제적자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3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단기 탈영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4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2010년 제9회 의안번호 90>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89호

위원 : 불명자로 계속 있었던 것임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90호

위원 : 도망이 아니라 실종 후 복귀한 자임

위원 : 실종시기가 중공군 공세 시기임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91호

특이사항 없이 부결

의안번호 제92호

위원 : 입대 전 범죄임.

위원 : 당시엔 말만 잘못해도 법적용을 하던 시대임

● 위원장 : 보안법 위반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참전한 자로서, 입대 전 범죄로 정상참작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93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입대 전 범죄로 정상참작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94호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입대 전 범죄로 정상참작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

<2010년 제8회 의안번호 127, 128>

의안번호 제121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122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123호()

위원 : 입대 전 범죄인데 중실화임. 고의성은 없어 보임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124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125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의안번호 제126호()

: 동일목적 동일장소에 간 사례인데요

: 저번 심의에서 사례별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음

○ 부 위원 : 가결의견

○ 위원들 : 동의함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127호

○ 위원 : 2명의 친구를 구조한 것임

○ 위원 : 친구들과 간 것으로 보호자 감독의무 등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128호

- 위원 : 구조행위를 2번씩이나 하였음
- 위원 : 1999년도에 사망하였으나 2010년도에 의사자로 인정되었음
- 위원 : 같이 놀러와서 한 행위인데 의로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위원 : 수심이 2~3m 지점에서 들어간 것이나, 음주를 한 것이나 본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129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국방부장관 제안 4건】

의안번호 제1호

특이사항 없이 부결

의안번호 제2호

특이사항 없이 부결

의안번호 제3호

- 간사 : 지난 십여에서 민사소송 사항을 확인 후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된 안건임. 민사소송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유족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함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

의안번호 제4호

특이사항 없이 가결

<2012년 제7회 의안번호 18, 19>

의안번호 제14호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중앙선 침범) 치상사고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5호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치상사고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6호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중앙선 침범) 치상사고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7호

- 위원 : 그동안 인사사고가 없으면 참작을 한 사례는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엄격히 적용해야함.
- :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사안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
- 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장 : 교통사고 중과실(무면허운전을 2회합)로 피해자가 3명이며 실행 수행, 다른 의견이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8호

- 간사 : 군입대 전 범죄임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군입대 전 상해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9호

- 간사 : 군입대 전 범죄임
- 위원들 : 안장대상 의견
- 위원장 : 군입대 전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범위반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4회 의안번호 95>

의안번호 제95호

- 위원 : 입대 전 범죄임
- 위원 : 부결의견
- 위원 : 입대 전이라도 부결 의견
- : 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 제96호

- 간 사 : 입대 전 범죄임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7호

- 위원 : 5.18부상 이전 범죄임
- : 안장자격 요건 취득 점 범죄는 중한 범죄가 아니면 기존 심의에서 참작을 하였는지?
- : 안장자격 요건 취득 전 범죄는 정상참작을 하였음
- 위원 : 가결의견
-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8호

- 위원장 : 1950년 7월 사망하였다고 했으나 호적상 1972.2월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위원 : 인우인 진술에는 1950년대에 죽었다고 함
- 위원 : 실제로는 1950년대에 죽었다고 하나, 호적 공부상에는 1972년에 사망한 것임.

<2012년 제7회 의안번호 20>

의안번호 제20호

간사 : 군입대 전 범죄임

위원 : 죄명은 주거침입이나 사건내용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이고 남자 3명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처녀 1명을 간음할 의도로 침입함. 입대전 범죄이나 의도자체는 나쁘다고 봄. 강간미수로 볼 수 있음

위원 : 입대 전 범죄이나 죄질에 문제가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음. 당시 25세면 적은 나이도 아님

위원 : 입대 전 범죄라도 죄질에 따라 거를 것은 걸러야 한다고 생각함

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군입대 전 범죄이나 사건내용 등 감안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1호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망사고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2호

간사 : 1966년 범치는 군입대 전 범죄임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등,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3호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과실범을 제외한 범죄 3건 이상 형 확정자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24호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평시 장기간 탈영 및 과실범을 제외한 범죄 3건 이상 형 확정자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2년 제8회 의안번호 103>

의안번호 제99호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전시탈영자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0호

- 간사 : 전투 중 행불되어 전사로 처리되었던 자임. 전몰군경 등록사실은 없음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전투중 행불되었다 복귀하지 않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1호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1952.3.1. 탈락처리 이후 복무기록 확인불가함,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2호

- 간사 :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무공수훈자의 사실혼배우자 인정 안건임
- 위원들 : 사실혼배우자로 인정 의견
 - 위원장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5명 등,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실혼배우자로 인정 의결함

의안번호 제103호

- 간사 : 2012년 제4회(3.16) 심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형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판결문이 없어 사건내용에 대해 유족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검토하였음. 유족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사건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함. 다만 당시 사회적으로 많이 어수선한 상황 이었고 이미 60여 년 전의 일인데다 이후 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오신 점 등 감안하여 선처를 요망하는 탄원이 있었음
- : 국가보안법위반하면 군대에 안가는 것 아닌 지
- 위원 : 전쟁중이니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음
- 위원 : 당시 나이도 26세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면 내용이 중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군입대전 범죄이고, 사건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국가보안법위반'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4호

지난 제7회(5.18) 심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군대 2번 입대한 경위에 대해 유족 소명자료가 있으면 보완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검토하였음

위원 : 유족은 고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나 1950.8.25.이후 복무기록이 전혀 없고,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입대한 걸로 보아 전투중 부대에서 나오 또는 실종되어 귀가를 했더라도 다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낙오되었던, 어쨌든 탈영상태로 있다가 다시 입대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음

위원 : 전투중 부상을 입고 치료 후 다시 전투에 참가를 하였다는 유족진술이 맞다면 제대기록이 있어야 할텐데...

위원 : 전시탈영을 했지만 이후에 다시 입대를 하여서 정상적인 복무를 마친 점에 대해 참작을 할 수는 없는 지

위원 : 첫 번째 입대를 고려하면 전시탈영자가 되고, 두 번째 입대를 고려하면 안장자격인 참전유공자 자격이 되지 않음

- 위원들 : 안장비대상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5호

이번 안건은 지난 제7회 안장심의시 보류된 안건임. 설명을 드리면, ○씨는 '8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3년 실형을 수형한 자임.

2006.3.14. 안장심의결과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되었고, 이후 유족이 비대상 의결부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권익위로부터 안장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견표명이 있었음.

보류한 사유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시다만,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씨와 ○씨에 대한 심의내용을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음.

○씨와 ○씨는 모두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신 분이고, 2008년도에 심의를 받았는데 두 분 다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되었음.

<2011년 제14회 의안번호 36>

[Redacted]

위원 : 고령이고, 시기적으로 건조한 때이고, 고의적은 아닌 것 같음

위원 : 순간적인 실수인 것으로 보임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6호

[Redacted]

위원 : 어린나무를 벌채하였는데...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음

위원 : 벌채한 나무는 모두 몰수하였음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7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8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39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0호

[Redacted]

위원 : 사기친 것 아닌가...

: 64년도 7만원은 상당히 큼

위원들 : 부결 의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7회 의안번호 106>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5호
- 위원 : 가결의견
- : 가결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 제106호
- 위원 : 산림법 위반은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40~60년생 나무이면 굵고 상당히 좋은 나무이기에 판매목적으로 보임. 부결 의견
- 위원 : 단순 생계형으로 보이진 않음
- : 부결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 제107호
- : 참나무는 좋은 나무는 아님. 당시엔 적발만 되면 무조건 기소되었음
- 위원들 : 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8호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104호 안건과 같이,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09호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8회 의안번호 60>

의안번호 제57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8호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불법 의료행위는 기존 심의에서 엄격하게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9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불법 의료행위는 기존 심의에서 엄격하게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0호

-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변제여부 등에 따라 안장여부를 결정 하였음
- 위원 : 기존 심의 사례와 비교시, 안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 : 가결 의견
- : 가결 의견
-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1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변호사법 위반 등 범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2호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10회 의안번호 60>

의안번호 제5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사기,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사기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7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사기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8호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사기죄 등으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9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사기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0호

- 위원 : 판결문상 변제여부 기록은 없는지
- 위원 : 변제가 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아닌지?
- 위원 : 그런것만은 아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통상적으로 변제가 될 경우 죄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음
- 위원 : 가결 의견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13회 의안번호 47>

의안번호 제46호

위원 : 부 의견임

공상군경 1급 양하지 마비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 보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음

위원 : 공인위조, 이장신청자, 부결 의견임

위원 : 좀 불쌍하긴 한데

위원 : 인감을 위조했다는 얘기 아닌가

위원 : 관인위조

위원 : 이장신청은 엄격히 심사했음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7호

위원 : 부정수표위반은 안장 비대상 의견이었음

위원 : 부 의견임

위원들 : 부결 의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48호

기존 심의사례는 앵속 15주~60주 소규모 단순재배는 안장대상으로 심의한 선례는 있었음

위원 : 너무 많은 것 같음

위원 : 내용은 관계없는데 오모씨의 부가 왜 김씨인가?

저도 이상했는데 판결문에 적혀 있었음

<2011년 제9회 의안번호 52>

- [redacted] 위원 : 장물취득죄는 임대 전 범죄인지?
- [redacted] : 임대 전 범죄임
- [redacted] : 판결문 상 피해경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음
- [redacted] : 가결 의견
- [redacted] : 다른 의견 없으며 약자 대사로 의결함

의안 제52호

- [redacted] 위원 : 사과를 하기 위해 집에 침입한 것인지?
- [redacted] : 판결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음
- [redacted] 위원 : 존속상해는 본인이 때린 것보다 부친이 야단을 치니까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보임
- [redacted] 위원 : 사실관계를 추정시 동네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로 보임
처음에 부친이 처벌을 원했다가 이후에 처벌을 원하지 안했던 것으로 보임
- [redacted] : 존속상해 외 정교한 사실을 사과하기 위해 뒷담을 침입한 것은 어떻게 보는지
- [redacted] 위원 :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 [redacted] : 판결문 상 정신이상 등 기록은 없는지?
- [redacted] : 판결문 상 피해가 큰 것 같지 않음
- [redacted] 위원 : 동네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로 보임. 영예성 훼손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의문임
- [redacted] 위원 : 가결 의견
- [redacted] 위원 : 정교한 사실을 인정할 점은 간통한 것이 아닌지?
- [redacted] 위원 : 정교한 사실이 혼인 이전일 수도 있음
- [redacted] : 혼인 이전일 수도 있음.
- [redacted] 위원 : 적용법률에는 간통죄가 없음.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폭력 행위등 처벌법 위반과 부친의 상해로 존속상해가 적용된 것임

[redacted] : 가결 의견

[Redacted]

: 사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유가족 탄원서 등 정상참작 사유는 있다고 사료됨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3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사기죄로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4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5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사기죄로,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6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사기죄로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7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8호

[Redacted]

○ 위원들 : 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9호

[Redacted]

●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변제여부를 검토하였음

○ 위원 : 당좌수표 1매가 부도난 것임

<2011년 제7회 의안번호 60>

의안번호 제58호

- 위원들 : 가결의견
- ◎ 위원장 : 입대 전 미성년 범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59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 위원장 : 상습적으로 행한 절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0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 위원장 : 야간주거 침입 절도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1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 위원장 : 특수절도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2호

- 위원 : 단순 이장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순직군인이며 입대 전 범죄로 가결 의견
- 위원들 : 가결의견
-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아자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3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4호

- 위원 : 가결의견
- : 가결 의견
- ◎ : 우발적인 단순폭행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

<2011년 제9회 의안번호 66>

의안번호 제64호

- : 사건 청탁 명목으로 2만원을 받은 것임
기존 심의에서 변호사법 위반은 엄하게 심의를 했음. 위원들
의견은 어떤지
- 위원 : 금액은 소액이나, 죄질 자체는 좋지 않음
- : 부결 의견
- :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6호

- 위원 : 사안은 현주건조물 방화에 해당되며 엄격 적용해야 함
- : 집안에 불을 지른 것은 아니고 현관 앞 마당에 불을 붙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물 방화로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위원 :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봄.
- : 부인에 대한 화풀이로 한 행위로 보임
- 위원 : 거주하고 있던 건물에 인명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사안임
- 위원 : 본인 연령도 62세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죄질 자체는 좋지 않지만, 6.25전쟁 상이자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참작할 수도 있음. 호국원 안장
이면 가결 의견
- 위원 : 죄질은 좋지 않지만, 정상참작하여 호국원 안장으로
가결 의견
- : 동의함

<2012년 제6회 의안번호 18>

의안번호 제1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 병합(음주운전, 도주차량)사고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5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교통사고 중과실(중앙선 침범) 치상 및 중과실(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망사고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6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과실범을 제외한 범죄 3건 이상 형 확정자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7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과실범을 제외한 범죄 3건 이상 형 확정자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18호

- 위원 :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큼
- 위원 : 원칙적인 자재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자재로 공사함
- 위원 :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음
- 위원 : 이전에도 방안에 불을 냈는데 피해규모가 커서 비대상 의결한 사례가 있음
- :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 같지는 않음
- 위원 : 전기주임과 같이 공사를 했는데 안장대상자는 전기공으로 보조수에 불과해 자재 결정권 없이 시키는 대로 공사를 했다고 보아지는데 그럴 경우 참작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됨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2011년 제8회 의안번호 93>

의안번호 제92호

- [redacted] 위원 : 공무집행 방해죄이나 크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redacted] 위원 : 상이처가 우안 실명자임
- [redacted] 위원 : 전투 중 실명까지 함
- [redacted] : 가결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3호

- [redacted] 위원 : 담장을 파괴한 것임
- [redacted] 위원 : 죄질이 좋지 않음. 다른 사람과 합세한 점이 우호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담장을 쌓기 전에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하였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물론 피해보수가 된 점은 참작이 될 수도 있음
- [redacted] 위원 : 정상참작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redacted] : 부결의견
- [redacted] : 다른 의견 없으며 아자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94호

- [redacted] 위원 : 인명을 직접적으로 구한 것은 아님
- [redacted] : 의도는 좋았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만큼 영예성이 있는지가 의문임
- [redacted] : 부결 의견
- [redacted] : 다른 의견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2012년 제1회 의안번호 61, 62>

- 위원들 : 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1호

· : 공문서위조는 위중하게 판단하였나요?

네.

원들 : 부결 의견

원장 : 공문서위조죄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호 제62호

· : 전기공사는 전년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 :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고 공사실적을 위조함

· : 무공훈장을 3번이나 받았음. 20년 이상 복무하고...

원들 : 호국원 안장을 조건으로 가결 의견

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호국원 안장을 조건으로 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3호

위원 : 정상참작이 어렵지 않나 생각됨

위원 : 장인, 장모, 장인의 아들 도장을 위조하였음

위원 : 상황은 이해가 되나 문서위조는 엄격히 적용하였고,
인장을 위조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관례상 문서위조는 비대상으로 심의하였음

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

의안번호 제64호

○ 위원들 : 부결 의견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장 비대상으로 의결함